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39호 / 주간 36호

2023. 9. 6.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보험사 설계·영업직원이 제시하는 가지급금 해소방안들의 적법성 검토	표지
C E O 에 세 이	젓꽃지 색칠이 회장의 기원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법인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 회계 처리 -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 연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등록시 검토할 세무적 문제 - 조건 만족 시 환불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임직원 등에게 발생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투자고용 촉진' 관련 내용 - 개인형 퇴직연금(IRP)	8 9
직장인 Survival	3단계로 쓰는 자기 PR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명목회사인 PFV가 실제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4128, 2022.12.08)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 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11 12
세정 뉴스와 해설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13
마케팅 Tax consulting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와 신탁자 중 선택하여 강제징수 집행 가능성	11
세무정보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안 개조식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	14 40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3

# 젓꼭지 색칠이 화장의 기원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는 문화(紋畵)다. 무늬 문(紋)이고 그림 화(畵)다. 무늬와 그림이 기호가 되고 또 문자(文字)가 되었다. 그러니 문화(文化)는 문자화(文字化)다. 아날로그는 소리의 높낮이인 파장(波長)이며 물결의 무늬인 파문(波紋)이다. 현대문명의 산물인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연속적인 실수가 아니다. 0과 1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언어이며 문자라고 할 수 있다.

귀와 입을 통해 인류는 말을 창조했다. 30만년전 쯤부터 목의 후강이 내려앉았다. 그래서 말 할 수 있었다. 또 눈으로 본 것을 그림과 기호로 표현했다. 그것이 문자의 기원이다. 얼굴과 몸에 치장한 문양들도 또 다른 문자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사서에 의하면 최초로 화장을 한 인류는 5만년 전의 크로마뇽인이다. 그들은 사냥을 나가기 전 종교의식을 치렀다. 동시에 몸과 얼굴에 안료를 칠해 장식했다. 그러다가 고대 이집트 시대에 화장법이 등장했다. 클레오파트라 의 눈둘레에는 짙게 아이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런 눈화장은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집트의 대지에 쏟아지는 햇볕차단과 벌레퇴치의 의미도 있었다.

또한 노출된 가슴에도 화장을 했다. 유두 언저리를 보다 파랗게 하고 젓꼭지에는 금색을 칠해 강조했다. 이러한 화장술이 현대 서양식 메이크업의 기원이 되었다.

문자의 기원은 구석기 중기인 BC 5만년경 돌이나 뼈에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새긴 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BC 1만년경 그림문자가 생겨났다. 본격적인 문자로는 중국의 갑골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쐐기문자, 이집트와 마야의 상형문자였다. 문자가 아닌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매듭이나 조가비피 등을 들 수 있다. 쐐기문자에 이어 페니키아 인들이 만들어낸 표음문자(Pictograph)나 표의문자(Ideogram)시대가 열렸다. 그 후 그리스인들이 BC 1000년경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계승 발전시켰다.

한자는 BC 2500년경 중국의 초대왕인 황제(黃帝)가 사관인 동이(東夷)사람 창힐(倉頡)에게 명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자(漢字)’라는 명칭보다 ‘고한글(古韓契)’ 또는 ‘동방문자(東方文字)’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흔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반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단군 3세 가림임금때인 BC 2181년에 정음 38자가 만들어졌다. 이 ‘가림토(加臨土)’문자가 한글의 시초라는 것이다.

또 배달국 환웅천황은 신지(神誌) 혁덕(赫德)에게 명하여 녹도문(鹿圖文:神誌文字)을 창제했다. BC 39~38세기경 창제된 녹도문은 이집트 상형문자(BC 3000년경), 수메르의 쐬기문자(BC 3000년경)보다 몇세기 앞서는 최초의 문자였다.

따라서 동이로 불리던 한(韓)민족은 표의문자인 한자도 만들고 가장 과학적인 표음문자인 한글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하간 세종대왕은 훗날 성삼문을 만주방면으로 열세번이나 보내어 가림토 문자를 연구케 했다. 그리하여 서기 1446년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했다. 한글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와 음양오행(陰陽五行)원리를 바탕으로 창제되었다. 하늘은 둥글어서 점, 땅은 평평하여 -자, 천지간 사람이 있어 |자로 표시해서 모음을 만들었다. 원(○), 방(□), 각(△)은 자음을 만드는데 이용했다. 원은 사람머리, 방은 사람 몸통, 각은 손발을 상징한다. 자음은 오행의 다섯가지로 응용된다. 일테면 기본 ㄷ에서 ㄴ, ㄷ, ㄹ, ㅌ 이 된다. 얼마나 희안한가.

세계언어학자들의 회의에서 한글을 ‘세계공통문자’로 쓰면 좋겠다는 토론도 있었다. 배우기 쉽고 쓰기에 좋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 speak(말하다)의 ea는 ‘이’로 발음한다. 그런데 head(머리)는 ‘헤드’라고 한다. 도대체 같은 ea도 발음이 다르다. 이처럼 영어는 단어자체를 알지 못하면 읽을 수조차 없다. 21세기는 디지털시대다. 그것에 제일 적합한 문자가 한글이다. 한글이 주요 수출품목이 되어야겠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5일 (금)	8월 28일 (월)	8월 29일 (화)	8월 30일 (수)	8월 31일 (목)
미	달	러 (USD)	1324.00	1326.60	1322.50	1322.00	1321.40
일	본	엔 (JPY)	906.88	905.00	903.13	906.69	905.07
영	국	파 운 드 (GBP)	1666.78	1668.86	1667.67	1672.26	1681.15
캐	나	다 달 러 (CAD)	974.46	975.58	972.32	975.25	976.28
홍	콩	달 러 (HKD)	168.85	169.13	168.56	168.48	168.41
중	국	원 (CNH)	181.54	182.10	181.65	181.34	181.09
유	로	화 (EUR)	1429.52	1431.93	1431.80	1438.86	1444.36
호	주	달 러 (AUD)	849.02	850.15	850.63	856.79	856.14
싱	가	폴 달 러 (SGD)	975.83	978.25	975.76	979.73	978.9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5.04	285.91	284.13	284.58	284.78

### 법인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 회계 처리

**Q** 당사에서 법인차량 (팰리세이드) 구매를 하였습니다. 차량 등록 관련 비용은 대행사에 선지급 한 처리 하였습니다. 선지급 대체 하려고 하는데, 회계 처리 시 두 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공채매입 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계정처리-> 차량운반구, other commission 중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2. 농협에서 채권 발행하였고, 대행사가 당사에서 선지급한 금액으로 비용 처리 하였는데, 이 때 supplier를 대행사로 입력하여 처리하면 회계 상 문제가 없나요?

**A**

1. 법령에 의해 차량과 별도로 구매하는 채권(공채)은 차량의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매도가 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순 대행사는 공급자가 아니고 실제의 공급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Q** 3년간 근무하고 2023년 1월31일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본인만 공제해서 연말정산 신고시 징수세액이 나오며 직원에게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3월10일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 미제출 직원분만 제외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제외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A** 연말기준 전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서류를 미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회수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귀사가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연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등록시 검토할 세무적 문제

**Q**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으며, 수익사업안에서도 면세사업(도서) 및 수익사업(연수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원은 수익사업으로 숙박시설 및 카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업, 음식점업/종목은 교육연구/카페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상에 생활형숙박시설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업태 및 종목은 어떤종류로 할 것이며, 기타 회계세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임대사업(숙박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자체에 별다른 세무회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조건 만족 시 환불

**Q** 당사는 인터넷 교육 업체입니다.

당사의 제품 중 조건 충족 시 환불 제품이 있습니다.

가령 8만원 제품을 한달간 사용하고 사용중 몇시간이상을 공부하고, 한달 종료 후 사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건 충족 후 환불받아가는 경우가 약 70프로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환불 금액을 매출 취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처리해도 될지 좀 애매한데 어찌하면 될지요?

**A** 해당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조건만 충족되면 환불해주는 경우라면 매출취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임직원 등에게 발생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처분 등이 발생하여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후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귀속이 명확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는데,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국세청의 결정·경정에 의해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임원이나 직원에게 근로소득세의 추가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여처분을 받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해 주고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다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서면2팀-825,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지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반영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소득세를 대납하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소멸로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된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2023년 세법개정안 중 '투자고용 촉진' 관련 내용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 해외자원개발자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연구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기술자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월양어선 ·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 화

#### 유류세 인하 기간 10월까지 연장

2023년 1월 1일~4월 30일 ⇒ 8월 31일 ⇒ 10월 31일까지로 연장

휘발유	25% 인하
경유	37% 인하
LPG 부탄	

## 가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가입처	증권사 또는 은행
세액공제한도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연간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이상은 13.2%
투자가능상품	적금상품, ETF, 펀드 등
인출 시점	55세 이상

※ 무주택자 주택구입시 중도해지 가능

## 목

### 유럽 주요국의 황재세 도입 및 추진 현황

	대상 업종	초과이익에 대한 세율
영국	에너지	발전 45%, 석유·가스 35%(석유, 가스 가격 2개 분기 연속 일정 수준 이하 하락 시 종료)
독일	에너지	33%
이탈리아	에너지, 은행	에너지 50%, 은행 40%
헝가리	에너지, 제약, 금융, 항공	업종별로 다름
포르투갈	에너지, 식품·유통	33%
크로아티아	에너지, 2022년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기업	에너지 90%, 나머지 33%
불가리아	에너지	90%



## 3단계로 쓰는 자기 PR

자기소개서에 자기 PR을 기재할 때의 보다 구체적인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자기 PR을 쓰는 것이 서투른 분은 다음 3가지 단계를 따라 써 보세요.

### 1) 경험이나 에피소드 등을 작성

우선, 자신의 경험과 일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작성합니다. 실적이나 보유 스킬, 성공 체험 등을 적어 보세요.

이 시점에서는 팩트 기반으로 머릿속 떠오른 것을 모두 적어봅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는 분은, 지금까지의 업무나 직장생활 활동 등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평가받았는지 기억해 보세요.

### 2)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기업에 적합한 것을 픽업한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적다보면, 그 중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에피소드를 골라냅니다. 지원하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기업이념, 업무내용을 조사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 3) 커리어의 활용 방법을 쓴다.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정해지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적어봅니다. 자신이 프로젝트에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 최신판례예규

## Marketing Tax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탁자와 신탁자 중 선택하여 강제징수 집행 가능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  
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  
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기본-3984, 2023.01.19

### 질 의

- 갑은 '08년경 질의자 명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  
법인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해당 주식을 '09년부터'  
10년 사이에 매도하고 해당 매도대금을 수령함
- 위 주식거래는 갑(명의신탁자) 주도로 진행되었으  
며, 질의자(명의수탁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 '22.5월 질의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의 주식  
변동조사가 진행됨
- 한편, '18.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명의신탁  
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개정  
전 명의수탁자(명의자)에서 명의신탁자(실제소유  
자)로 변경하면서 개정 전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  
대납세의무를 폐지함

### 질의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결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명의수탁자(수증자)의 증  
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강제  
징수절차에 있어 증여자 재산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  
는지 여부

### 회 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수탁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결과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  
자)와 연대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임  
의로 한 명을 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거나 양자  
모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  
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  
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4712, 2022.12.06

### 질 의

- 질의법인은 '20.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
- △△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
- 질의
- 질의법인이 (주)◎◎와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  
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조세특례제한법 §104의  
31①(1) 및 같은 법 시행령 §104의28②의 소득공  
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  
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 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제도과-32, 2023.01.19

**질 의**

•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적용 기준

**회 신**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요건은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의미하며,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 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부동산 취득 후 발생한 명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재산-1137, 2023.01.17

**질 의**

•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와 점유 시설물 명도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상가 양도시 이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점유중인 기존 임차인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대신 지급한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 이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8.~8.7.) 및 입법예고(7.28.~8.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제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관세청, 9월1일부터 복잡한 절차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관세 납부 가능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다. 관세청은 다만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에 대한 염려가 될 경우 기존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인터넷 지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할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월 1일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다.

관세청은 또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

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면서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자녀세액공제, 2자녀 30→40만원으로... 진선미 의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를 둔 거주자의 자녀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녀수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간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수 3명 이상 일 경우는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늘려, 자녀수 1명이면 20만원, 2명이면 4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 인상으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라며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김주영, 노웅래, 안호영, 이동주,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태호, 최기상, 한병도, 홍성국의 원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국세청, 2023. 8

## I. 지방세 정책 여건

### 1 경제 여건

#### □ (경기) 소비·수출 등 경기 여건 개선 예상, 불확실성도 상존

- (대내경제) ①(소비) 완만한 소비 회복세 지속, ②(수출) IT 업황 회복 영향으로 수출 개선이 예상되며, ③(투자) 기업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 존재
  - 다만 고금리 등은 소비 제약요인으로, 건설투자 선행지표 둔화\* 등이 투자 제약요인으로 작용
    -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 ('22.1/4) 13.2 (2/4) 22.2 (3/4) 30.5 (4/4)△17.4 ('23.1/4)△11.1
- (대외경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기업·소비심리 반등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히 개선 예상\*\*
  - \* OECD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 : ('22) 7.8 → ('23) 6.1 → ('24) 4.7
  - \*\* 세계경제 성장률('23.6.) : (OECD) 2.6%→2.7%, (세계은행) 1.7%→2.1%
  - 다만 고금리 영향에 따른 미국 성장세 둔화 및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 (민생)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예상, 고용 지표 양호 전망

- (민생경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둔화 흐름 지속 및 대면서비스·보건복지업 중심의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 유지 전망
  - 다만, 기상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 요인 상존
    - \* 러·우 전쟁 향방, OPEC+ 추가감산 여부, 흑해곡물협정(~'23.7월) 연장 여부 등

□ (경제구조) 인구위기 등으로 생산성 정체 제약

- (경제구조)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심화\*되며 경제 잠재성장률 제약
  - \* 생산연령인구 증감(만명, 15~64세) : ('10) 34 → ('15) 19 → ('20) △15 → ('25e) △32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및 3대 구조개혁, 시장경쟁 촉진,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등 통한 생산성 향상이 관건
  - ※ 총요소생산성(미국 = 100 기준) : (獨) 92.7, (佛) 90.9, (英) 78.7, (日) 65.6, (韓) 61.4

2 지방세입·세출 여건

□ (세입) 부동산 거래·국세 감소로 지방세 전반에 세수 감소 예상

- (거래세)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전년 대비 취득세 규모는 감소 추세\*\*
  - \* 전년동기 대비 1~6월 부동산 거래량 : 주택 △11.5%, 건축물 △25.4%, 토지 △27.3%
  - \*\* 전년동기 대비 1~6월 취득세 감소분 : △ 32,783억원
  - 단, 금리 변동 등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취득세 징수 규모 반등 여지
- (보유세)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20년 재산세 수준으로 세부담 정상화
  - 세부담상한제, 과표상한제 등으로 인해 재산세 변동성 감소 전망
- (국세 연동) 소득세 및 부가세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추세\*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규모도 감소 전망
  - \* 전년동기 대비 1~6월 징수액 : (소득세) △11.6조원, (법인세) △16.8조원, (부가세) △4.5조원
  - 단, 지방소비세율 인상, 완만한 소비회복세 등은 증가요인으로 작용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 (세출)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민생안정 지원) 집중호우,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피해시설 복구 및 고금



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민생경제 안정 지원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 열악한 세입 여건 하,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 등 지역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합리적·효율적인 방향의 지방세 정책 추진 필요

## II. 2023년 지방세 정책 추진경과

### 1 '23년 지방세 주요 정책 성과

#### □ 균형발전·물가안정·전세사기 대책 등 국정 현안에 적극 대응

- (지역 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內 사업장·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 ㄱ (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ㄴ (사업전환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물가안정) 대중교통 및 공공요금 인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원
  - ※ 한국철도공사 및 SR, 지방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확대
- (세부담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전 과표구간 세율 인하(0.1%p)로 서민 및 기업 세부담 완화
  - \* (1,200만 / 4,600만 / 8,800만 → 1,400만 / 5,000만 / 8,800만원)
-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추진

#### < 지방세 분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

- (지방세 감면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6.1. 시행)
- (지방세 채권 안분) 주택경매 시 임차보증금 배당이 확대되도록 지방세 채권의 안분 방식 개선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제정, 7.2. 시행)

####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추진

-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경우, 1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소득 제한없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
- (재산세 부담완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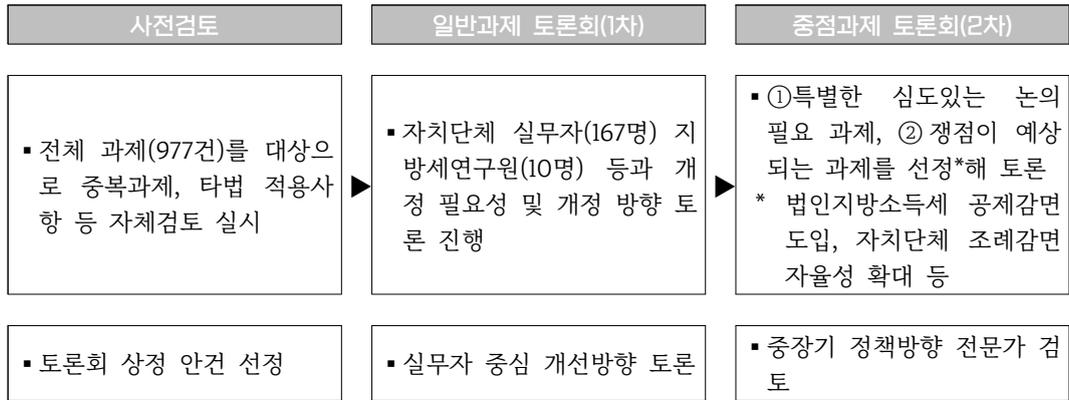
원하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주택가격별 43~45% 수준으로 인하(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6.30. 시행)

- (재산세 납부유예)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재산세 납부유예
  - \* ① 1세대 1주택, ② 만 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 2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 추진경과

- (의견수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
  - (개정건의) 복잡·다변화된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 관계부처, 지방세 관련 학·협회, 민간전문가 등의 개정건의 수요 조사\*
    - \* '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및 세정운영 개선 요구과제 총 977건
  - (건의사항 검토) 제출한 개정건의에 대해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을 검토·논의하고 지방세제 개선안 마련
    - \* 중앙부처, 지방세연구원,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조세법학회, 상공회의소 등



- (지방세발전위원회) 정책 수용성 및 절차적 투명성 증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전문가 정책 자문(6.30.)

- (지방세 지출 정비) 각 부처 일몰연장 및 신설·확대 건의 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 원칙 및 법정 절차에 의거 검토, 지방세 지출 재설계
  -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국무회의 의결, 각 부처 통보(2.28.)
  -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3.31.)
  - 감면 기간 중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신설·확대 및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신설·확대)·심층평가(연장) 수행(3~7월)
  -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지자체·지방세연구원, 6.15.~16.)

### III.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기본방향

- ❖ 기업·혁신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 안정적인 주민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민·취약 계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 저출산 대응 등 인구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지원
- ❖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방세정 환경을 구축
- ❖ 납세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목표

지역 경제 도약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

추진  
과제

#### 경제활력 제고

-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술 혁신 지원

#### 민생안정 지원

-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서민 경제 지원

+

기반  
마련

####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마련

- 지방세 체계 효율화
-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 국민 편의 증진

### IV.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 1. 경제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획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p>기술 혁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li> <li>▪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li> <li>▪ 국방·해양과학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li> <li>▪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li> </ul>
<p><b>2. 민생안정 지원</b></p>	
<p>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li> <li>▪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li> </ul>
<p>취약계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li> <li>▪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li> <li>▪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확대</li> <li>▪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법정화</li> </ul>
<p>서민 경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li> <li>▪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li> <li>▪ (금융지원)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li> <li>▪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연장</li> </ul>
<p><b>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b></p>	
<p>지방세 체계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li> <li>▪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li> <li>▪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li> </ul>
<p>지방세입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li> <li>▪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li> </ul>
<p>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li> <li>▪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li> <li>▪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li> </ul>
<p><b>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b></p>	
<p>납세자 권익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li> <li>▪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li> <li>▪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li> <li>▪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li> </ul>
<p>국민 편의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li> <li>▪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li> </ul>

# 1 경제활력 제고

## 1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 (특례법) 신설

- 지방투자 확대, 지역활력 제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 (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감면 신설
  - ※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 감면안 발표 예정
  - ① (이전기업)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과세특례 부여
  - ② (창업기업)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 등을 신설하여 특구 내 기업 운영 지원

###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신설

-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대상) 과밀억제권역 外로 복귀, 국내복귀기업(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으로 선정
  - (요건) 해외사업장 폐쇄·양도(축소 제외\*)→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 신·증설 등
    - \*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해외이탈 가능성, 감면 취지(복귀시 초기비용지원) 고려 제외
  - (물건)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추징) 국내복귀기업 이행요건(4년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완료) 미충족 취득 후 직접사용 의무 미이행 및 매각·증여 등

구 분	현 행	개 정 (감면율)
해외사업장을 폐쇄·양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기업에 限 ※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限	<신 설>	취득세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가능 재산세 75% (5년간)

### □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지방세법)

-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등 법인의 납세 부담완화

구분		현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신 설>	세액이 1백만원(국세 10%) 초과시 ※ 분납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분납기간	<신 설>	납부기한 종료일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 ※ 하나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가산세(20%)가 부과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개선

구분	현행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율	20% ※ 무신고가산세와 동일	10% ※ 과소신고가산세와 동일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 (현행)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에서 제외\*
  - \* 자본금·출자금 납입 등은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
  - ※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모두 비과세로 규정, 법률간 모순·저촉으로 자치단체별 과세 여부 혼란
- (개선)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 등기 시 예외 없이 비과세하여 원활한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

구분	현행	개정
파산, 회생절차 상 촉탁 또는 직권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비과세 (단, 법인의 자본금·출자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은 비과세에서 제외)	촉탁 및 직권에 의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일괄 비과세

□ 자치단체 조례감면 자율성 확대(특례법)

- 조례감면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지역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감면 허용범위 및 예외적 허용 사유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조례 감면	감면 허용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경우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법」 상 자치사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 재산 피해가 확인된 경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		

□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연장(특례법)

**연장**

-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안정 및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 75%·재산세 100%(3년*) * 이후 2년간 50%	감면 연장

2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특례법)

**신설**

-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선박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경감

\*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사용 또는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사용 선박

※ (예시) 2등급 친환경 선박(300억원)의 주문건조 시 취득세액 4억 5천만원 경감  
(당초) 6억 600만원 (세율 2.02% 적용) → (개정) 1억 5,600만원 (세율 0.52% 적용)

구분	현행	개정
친환경 인증 선박	<신 설>	취득세 세율 1-2%p* 경감 * 인증등급별 경감세율 차등 적용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

□ 연구 분야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특례법)

**신설**

-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및 체육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해당 연구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감면율)
①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②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	<신 설>	취득세 50% 재산세 50%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연장**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친화적 요건을 갖춘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5~10%	감면 연장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	(등급별) 취득세 15~20%	감면 연장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10%	감면 연장

※ 각 건축물의 등급별 취득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법)

**재설계**

- 창업·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해당 집적시설 등의 감면을 연장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

구 분		현 행(감면율)	개 정(감면율)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 행 자	취득세·재산세 50%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	△15%p	
			(지 방)	취득세 35%	△15%p	
	입주기업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배제	(수도권)	중과 세율	취득세· 재산세 50%	+50%p
			(지 방)	일반 세율	취득세 50%	+50%p
				재산세 60%	+60%p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시행자	취득세·재산세 50%	(수도권)	취득세·재산세 35%	△15%p
			(지방)	취득세 35%	△15%p
	신증축자	취득세 50% 재산세 50% (3년)		(수도권)	취득세 50% 재산세 50%(3년)
			(지방)	취득세 50%, 재산세 60%(3년)	+10%p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취득세 75% 재산세 50% * 학교 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 감면	(수도권)	취득세 50%	△25%p
				재산세 50%	-
			(지방)	취득세 50%	△25%p
				재산세 60%	+10%p

## 2 민생안정 지원

### 1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 □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특례법)

**신설**

- 주택 취득비용 절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면제  
\* 출산일 기준 前으로 1년, 後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限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특례 신설 이후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설>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특례법)

**연장**

-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연행	개정(감면율)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

## 2 취약 계층 지원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연장**

- 고령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연행(감면율)	개정
노인 복지시설	경로당 취득세 100%·재산세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감면 연장
	무료 취득세 100%·재산세 50%	감면 연장
	유료 취득세 25%·재산세 25%	감면 연장

###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연장**

- 청소년의 자기역량계발과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연행(감면율)	개정
청소년 단체	취득세 75%·재산세 100%	감면 연장
청소년 수련시설	취득세 100%·재산세 50%	감면 연장

### □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확대(특례법)

**연장+신설**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 국가 수호·국민생명보호 외 통상의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입은 자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감면율)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단체 고유업무 부동산 등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보훈 보상 대상자 등 보철용 자동차	<신설>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 법정화(특례법)

**신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지방세 법정\*\* 감면지원 신설(현재 물적 피해지원만 규정)
  - \*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 / \*\* 현재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 중
  - 특별재난지역 지정없는 재난의 경우, 자치단체는 행안부 통보지침에 따라 지체없이 지방의회 의결 추진해야 하는 의무절차 신설

구분	현행	개정(감면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유가족에 대한 감면	<신설>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100% ※ (취득세) 상속 취득분 限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限 ※ (지원기간) 사망일이 속한 회계연도 1년간

**3 서민 경제 지원**

□ (주거안정)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지방세법)

**연장**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과표구간별 세율\* 0.05%p 인하) 3년 연장
  - \* (~6,000만원) 0.1%, (6,000만원~1.5억원) 0.15%, (1.5억원~3억원) 0.25%, (3억원~) 0.4%

구분	현행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21년~’23년 한시)	세율 특례 연장(3년)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특례법)

**연장**

-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국세(소득세) 공제·감면액의 10%	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감면연장(특례법)

**연장**

-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
농·수협 등 중앙회	취득세 25% 재산세 25%	감면 연장
농·수협 등 지역조합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연장

□ (금융지원) 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연장**

-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서민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감면율)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연장
	복지사업 등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연장

□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특례법)

**연장**

- 농어촌 인구 유입,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자경농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구분		현행(감면율)	개정
농업	자경농민	취득세 100%	감면 연장
	농업법인	취득세 50%*, 재산세 50% * 초기 법인(설립 2년內) 취득세 75%	감면 연장
어업	자영어민	취득세 50%	감면 연장
	어업법인	취득세 50%, 재산세 50%	감면 연장

### 3 합리·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 1 지방세 체계 효율화

#####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지방세법)

- (현행) 항공기를 리스 방식으로 국내 수입 시 금융리스는 취득세를 과세, 운용리스는 비과세 중이나, 법 규정상 양자 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 (개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실질적 차이\* 등을 반영하여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 라는 과세 관행을 법 문언으로 명확화
  - \*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금융리스 와 임대차 성격의 운용리스는 달리 볼 필요

구분	현행	개정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취득세	금융리스 과세 운용리스 비과세 (법 문언상 구분 모호)	금융리스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토록 규정 명확화

#####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지방세법)

- (현행) 신탁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불분명
- (개선)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위탁자가 취득을 위해 투입한 신탁 수수료 포함)을 과세표준에 포함토록 문언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위탁자 지급비용 포함)

**□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특례법)**

- (현행)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 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하되, 부과 세액이 종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 과세 중
  - 친환경 자동차로 교환 시 중복 특례를 적용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친환경 자동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
    - \* (하이브리드차) 40만원 한도 면제, (전기·수소차) 140만원 한도 면제
- (개선) 요건 해당(일반 내연차 → 친환경차) 시 초과분에 대하여도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
중복감면 예외 규정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	(추가) 교환자동차 취득

**2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특례법)**

- (감면요건 일원화) 개별 감면요건을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직접 사용'으로 명확화\*,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
  - \* 그 외 일반 규정에서는 소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요건으로 규정 중

구분	현행(감면요건)	개정(감면요건)
일반 감면대상	직접 사용	직접 사용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설치·운영 사용	

- (감면요건 강화) 감면체계가 유사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감면요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구분	현행	개정
농업법인 감면요건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경영정보등록 의무 포함
어업법인 감면요건	경영정보등록 의무 미포함	

- (사후관리 강화) 유사 납세자 간 동일 기준의 감면 및 추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 도모

구분	현행	개정
위탁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 ('23년 개정) 위탁 운영 시 취득세 50% 경감 신설	<신 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하지 않는 경우</li> <li>② 위탁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i> </ol>
반환공여구역의 추징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징 유예기간) 3년</li> <li>② 他 용도 사용 시 추징요건 부재</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징 유예기간) 3년 → 1년</li> <li>② 직접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他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토록 규정</li> </ol>

####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 (기본법)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
  -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징수금에 대해 소유주식 한도 내에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구분	현행	개정
출자자 체납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매각하려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을 때</li> <li>② 법률 등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양도 제한 시</li> </ol>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외국법인의 출자자 소유주식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 제한 시</li> </ol>

### 3 자치단체 공동협력 기반 조성

####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기본법)

- 집단기획소송 등의 증가로 인해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인 소송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 '지방세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② 청구일자 및 답변서 제출기일, ③ 사건 개요, ④ 종결 시 결과 등

구분	현행	개정
지방세 소송자료 제출의무	<신 설>	지방세 소송 등 제기 또는 종결시 10일 이내 자료* 제출 *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개요, 결과 등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별로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낭비 방지를 위해,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

구분	현행	개정
비정상적인 방법(불법·허위신고)으로 제조·반입한 경우* * 담배소비세의 수시부과 사유	특·광역시, 시·군이 각각 부과·징수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각 지자체 납입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본법)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구분	현행	개정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의무	신 설	예산, 결산서, 예산집행 현황, 경영실적평가, 외부기관의 감사, 재무 현황 등을 공시



## 4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1 납세자 권익 보호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기본법)

- 소액채납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지방세법)

- (현행)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배제
  -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
  - \*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를 모두 합한 세액
- (개선)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유상거래 시 중과세의 예외 제외 사유 발생	별도 신고절차 없음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취득시점부터)	신고기한 내 납부 시 없음

#### □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징수법)

- ※ 국세일치('20.12.29.)
-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의무화

구분	현행	개정
압류 후 매각·추심의 시기	<신 설>	압류 후 1년 이내 ※ (예외)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 진행 등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지방세법)**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면제 신설  
 ※ (소유분 자동차세) 세액 2천원 미만에 대한 징수면제는 既 규정

구분	현행	개정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	<신 설>	징수 면제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사례)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오토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2 국민 편의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징수법)**

- ※ '23년 국세 동반개정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
  -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구분	현행	개정
매수대금 납부	① 매수대금 전체를 납부하고, ② 배분기일에 채권액 수령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

**□ 이의신청 대리인 기준 변경 (기본법)**

- ※ '23년 국세 동반개정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신청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구분	현행	개정
지방세 이의신청 시 변호사 외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한 금액 기준	1천만원	2천만원

## V. 세수효과

- '23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820억원
  - (증가 요인) 유사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면율 조정 등
  - (감소 요인)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지원 신설,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 VI. 추진 일정

- (대상 법률: 총 5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재·부과금법
- 향후 일정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 8월 17일(목)
  - 입법예고(31일간) : 8월 18일(금) ~ 9월 18일(월)
  - 법제처 심사 : 8~9월
  - 국회 제출 : 10월 중

### 참고 1 -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 1 지방세기본법

※ □ : 주요 개정내용(본문내용과 동일)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법\$47)	○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등이 외국에 있어 체납처분이 제한될 경우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개선 * 법인 출자자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 부담	국세일치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합리화(안 법\$48)	○ 선의의 사업양수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양도인의 체납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한정	국세일치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55)	○ 소액체납자 세부담 완화 및 국세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 상향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 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되는 금액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④ 소액심판 기준 상향에 따른 대리인 관련 기준 변경(안법§93)	○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선임가능한 지방세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지방세 이의신청시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규정	국세 동반
⑤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150의2)	○ 행안부가 '지방세 소송 등*'의 제기 및 종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 *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등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일자 및 사건 개요, 결과 등	
⑥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 등(§151)	○ 지방세연구원 위상 증대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 경영실적 평가, 재무 현황 등 주요 경영지표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⑦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우편법」,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52, §61, §70)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추심 등을 착수하도록 규정 신설 - (예외) 법률상·사실상 매각·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 일치
②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94의2)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신설	국세 동반 개정
③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 (§102, §102의2, §103)	○ (배분절차)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심판청구등으로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 ○ (배분금전 예탁) 채권자가 배분계산서에 대한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배분이 유보된 금전을 지자체 금고에 예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국세 일치
④ 조문 정비 (§9, §11, §71)	○ 반복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체납자의 불복수단과 관련된 조문 정비* *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 '심판청구 등'	국세 일치



##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리스항공기 등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7)	○ 외국인 소유 항공기 등의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금융리스)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 명확화(운용리스 제외)	
② 신탁수수료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규정 개선 (§10조의3, §22조의2)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에 혼란이 없도록 규정 명확화 ○ 신탁수수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건설비용 등)될 부분과 아닌 부분(분양보수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수탁자가 신탁수수료를 계정별로 구분 기장하도록 근거 마련	
③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20①)	○ 유상취득(신고기간 60일)과 무상취득(신고기간 3개월)이 혼재된 부담부증여*의 취득세 신고기간을 신고기간이 긴 무상취득 신고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 * 10억 원짜리 주택(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대출 4억 원은 유상취득, 6억 원은 무상취득	
④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예외 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20③)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하는 등 주택 취득 시 중과가 배제되었으나,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등 사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신고토록 하고 가산세 미부과* * 현재는 사후에 중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산세 부과	
⑤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정비 (§26②)	○ 현재는 회사정리 등과 관련된 법원 등의 촉탁에 따른 등기·등록 시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면서도 자본금 납입·증자 등의 경우 비과세를 제외하나, 기업회생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상의 법원의 촉탁 등은 예외 없이 비과세	
⑥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개선 및 보완 (§27)	○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5-10년)이 경과한 물건을 등록할 때 현재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장기간이 경과한만큼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변경	
⑦ 담배소비세 납세지 명확화 (§50)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납세지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 기존 세관 소재 지자체에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고액의 체납액이 특정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	
⑧ 미납세반출 후 타용도 사용시 추징규정 삭제 (§61)	○ 미납세 반출후 다시 반입된 담배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음에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게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⑨ 담배소비세 특별징수 의무자 규정 신설(\$62)	○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 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시 과세권자인 특·광역시, 시·군(166개)이 각각 부과·징수하고, 개별 소송 대응하는 등의 행정 비효율을 방지	
⑩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103의23, \$103의37)	○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은 2개월	
⑪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시 가산세 감경(\$103의24)	○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	
⑫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3의61)	○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을 '24년 과세기간까지 2년 연장	
⑬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신설(\$103의37)	○ 연결집단의 결손이 소득보다 큰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에는 정산이 가능하도록 세액배분 방식*을 규정 * 각 연결법인별 소득과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국세 일치
⑭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103의53, \$103의54)	○ 동업기업인 동시에 동업자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동업기업 특례*가 적용되도록 요건 합리화 * 동업기업(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업자(출자자)에게 과세하고 동업기업은 비과세	국세 일치
⑮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118의2)	○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화 ※ 현행 납부유예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세율 특례 조항을 인용하여 혼란이 있음	
⑯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부칙\$2)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재산세율을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 한시 적용 중('21년-'23년)	
⑰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 면제 신설(\$137)	○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면제	
⑱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명확화(\$143)	○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일치함을 명확히 함 * (현행)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개선) 건축물 또는 선박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 소방분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납기 등 규정을 준용 중	
⑲ 지방교육세 조문 정비 (\$152)	○ 담배소비세를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하는 절차 규정이 있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에도 조문체계 정비를 위해 '납입' 문구 추가	

##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자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4)	○ 지자체 현안 대응력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조례 감면 활성화 기반 마련* * 조례감면 가능 범위를 자치단체 사무로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대상 기준 완화 등	
② 농업분야 사후관리체계 정상화(\$6 등)	○ 감면 목적 및 감면 물건이 유사한 납세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정규정의 통일적 정비 * 자경농민·귀농인·농업법인	
③ 어업법인 감면요건 강화(\$12)	○ 감면대상 어업법인에 대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 의무 부여* * 농업법인은 '20년부터 농업경영정보의무 既부여	
④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관리 규정 신설(\$19)	○ 직장 어린이집 용도로 위탁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사후관리 규정 신설 * (現) 직접 사용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사후관리 규정 有	
⑤ 감면요건 “직접 사용” 통일적 규정(\$19의2 등)	○ 입법취지 및 특례 체계에 부합토록 감면 요건을 “직접 사용”으로 통일·명확화* * (現) 일부 조문상 “설치·운영”, “사용” 등으로 규정	
⑥ 생애최초 주택 감면요건 명확화(\$36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요건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범위 명확화	
⑦ 법인 적격분할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7의2)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적격분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 ※ (국세) 적격분할 대상에서 임대업 제외 既개정('20년말)	
⑧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명확화(\$58의3)	○ 감면 제외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영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개인이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	
⑨ 반환공여구역 감면 사후관리 규정 강화(\$75의4)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유사 감면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정요건 보완·정비	
⑩ 소멸·멸실 자동차세 면제규정 일원화(\$92)	○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면제는 비과세 성격으로 지방세법으로 일원화* * (現) 동일 면제 내용을 2개의 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 중	
⑪ 재난신속대응 지방세 감면지원 체계 구축(\$92)	○ 국가적 재난(특별재난지역선포 등) 발생시 신속·통일적 감면 지원되도록 체계 구축* *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유가족 지방세 감면, 그 외 전국적 재난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⑫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179의2 등)	○ 건축 중인 경우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는 등 체계 명확화 * (現) 법상 별도 위임없이 영에서 규정	

⑬ 교환자동차 중복 특례 명확화(\$180)	○ 제작 결함으로 인해 교환 취득시 중복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화 * 종전 취득시 부담한 세액까지는 세액공제 + 종전부담 세액 초과분도 개별 감면요건 충족시 감면
--------------------------	---

##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비고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시기 조정(법 부칙)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일정 조정에 따라 동일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24. 1. 1.에서 '25. 1. 1.로 조정	

### 붙임 2 - 2023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안) 요약표

(단위 : 억원, '22년 결산 기준)

유형	주요 내용		지출액		
	분야	세부 내용	현행	향후	증감
합 계			20,266	20,988	722
소 계			-	856	856
신설 (9건)	농·어업	▶농협경제지주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13)	-	13	13
	사회복지	▶출산가구 주택(625) ▶보훈대상자 자동차(8)	-	633	633
	교육·과학	▶지방대 수익용부동산 ▶연구공공기관 부동산(10) (28)	-	38	38
	문화·관광	▶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18)	-	18	18
	수송·교통	▶친환경 인증 선박(66)		66	66
	국토·지역	▶기회발전특구(-) ▶국내복귀기업(88)		88	88
소 계			20,046	20,046	-
연장 (현행 수준) (33건)	농·어업	▶자경농민·자영어민 ▶농어업법인 등	1,765	1,765	
	사회복지	▶아동·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553	553	
	교육·과학	▶녹색인증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주택	115	115	
	기업구조	▶창업(벤처)중소기업 ▶학교내 창업보육센터	989	989	
	공공행정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등 부동산	162	162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국세와 일치)	16,462	16,462	
소 계			127	86	△41
연장 (재설계) (7건)	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단체 범위 확대	5	6	1
	교육·과학	▶과학기술분야 연구공공기관 부동산	91	54	△37
	기업구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31	26	△ 5
소 계			93	-	△93
종료 (4건)	교육·과학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 등록면허세	43	-	△43
	기업구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도시 중과세 제외	0	-	0
	수송·교통	▶지능형해상교통정보 무선국 등록면허세 ▶대기업 항공사 운송사업용 항공기	0	-	0
소 계			50	-	△50

#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 국세청, 2023. 8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의 복잡한 메뉴체계 및 노후화된 디자인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하여 8월 26일(토) 새로 개통하였습니다.
- 먼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하고
  -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를 제공합니다.
    - \* (예) '개인'이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 제공
    - '법인'이 로그인 시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 제공
  -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 (종전)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 (정비)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 (종전) 발급된 증명정보 → (정비)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
- 아울러,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사항과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여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21인치 이상)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 (종전) 최소 12글꼴 사용 → (개선) 최소 14글꼴, 주로 15글꼴 사용
    - 홈택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합검색창과 로그인을 초기화면 전면에도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하여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납세자 유형별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와 홈택스 시스템 사용 기록(Log) 정보를 활용한 「최근 인기 메뉴」를 제공하고
    -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한편, 「홈택스 이용 길잡이」 안내를 통해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을 상세하게 구성하고, 고령자(시니어)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규 사업자,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 복잡한 홈택스 메뉴체계를 맞춤형 메뉴로 개편하였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미리·모두채움 신고 강화,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
- 그러나, 홈택스 포털이 오래되어 제공 정보가 산만하고, 메뉴체계가 복잡하여 쉽게 이용 가능한 맞춤형 홈택스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 국세청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홈페이지 비교 분석을 통한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여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홈택스로 전면 개편하여 8.26.(토) 선보였습니다.

## 1 메뉴체계 개편

- 여러 메뉴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약 840종)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무업무 성격에 맞게 분류하여 메뉴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특히,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6종)를 납

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하였습니다.

| 홈택스 최상단 메뉴 |

중전 (6종)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납세관리
개편 (8종)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세무대리·납세관리		

**2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부터 로그인 후에는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간소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예시) 개인납세자가 로그인 전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화면이 조회되나 로그인을 하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등 개인이 이용하는 메뉴만 나타남

**3 메뉴명 정비**

□ 메뉴명에 핵심 단어가 누락되거나 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메뉴명 정비(예시) |

종 전	정 비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과세유형전환	과세유형전환 이력 조회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
발급된 증명정보	세무대리인이 발급한 나의 증명조회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또한, 특정 화면에서 버튼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메뉴로 등록하여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메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시)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등 151종

## 4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제공

- 종전의 홈택스 메뉴에 익숙한 사용자들을 위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기능도 제공하였습니다.

◆ 홈택스 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버튼을 눌러 조회

## II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제공합니다

### 1 홈택스 포털 디자인

-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납세자 요구사항과 국내·외 우수 웹사이트 비교 분석을 통한 최신 트렌드를 접목하여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 고령자·저시력자도 홈택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 주로 보유한 모니터 크기(21인치 이상)에 맞춰 상·하 확장형으로 화면을 넓게 구현하고 글자 크기\*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 (종전) 최소 12글꼴 사용 → (개선) 최소 14글꼴, 주로 15글꼴 사용
  -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이용이 많은 통합 검색창①과 로그인②을 초기화면 전면에도 바로 보이도록 배치하였습니다.
  - 통합검색창 왼편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를 함께 제공하고,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하여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 2 방문자별 맞춤 메뉴

- 아울러, 방문자별 맞춤 메뉴, 최근 인기 메뉴, 월별 세무일정 도입 등 홈택스 포털을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세무 시기별로 납세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묶어 홈택스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구성하여 상단에 배치하고
  - 홈택스 시스템의 사용 기록(Log) 정보를 활용하여 최근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메뉴 10종을 「최근 인기 메뉴」로 제공하였습니다.



### 3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납세자가 「월별 세무일정」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연관된 메뉴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 또한, 세무일정과 연동하여 「세무 업무별 서비스」도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 (예시) 8월에는 「월별 세무일정」에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이 조회되고,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도 자동 연동되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순으로 나타남

#### |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

- ① 월별 세무일정 : 신고·신청 등 '기한일자'와 '일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② 세무 업무별 서비스 : 세목별로 세금신고·납부, 민원증명, 세무서류 신청, 과세자료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포털(21종 구성)
- ③ 세무일정을 클릭하면 연관된 메뉴로 바로 접속 가능함

### 4 홈택스 이용 길잡이

- 한편으로는 「홈택스 이용 길잡이」 안내를 통해 홈택스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홈택스 이용안내', '주요제도 소개', '신규사업자 이용안내' 등도 상세하게 구성하고, 고령자(시니어)분들이 홈택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안내하는 화면과 추천 메뉴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초년생, 신규 사업자,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III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홈택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사용자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참고 1 - 새로운 홈택스 메뉴체계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신청신고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세무대리·납세관리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세금납부	즉시발급 증명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근로자장려금 정기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나의 상담내역	세무대리 공통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내역/ 세액계산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자(세금) 계산서 조회	상담하기	신고대리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환급	기타 민원 증명	과세자료 제출	근로자장려금 관련 자료 조회/제출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상담사례	기장대리
양도소득세 신고	국세고지	민원증명 조회/관리	과세자료 조회/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매입지출증빙)	영세납세자 자원단 신청 및 관리	기장· 수입납세자 관리
법인세 신고		세무서 방문 민원 관련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편리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가맹점)	불복청구	납세관리인
원천세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휴폐업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고충민원	나의 세무대리 관리
증여세 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용카드 매입	권리보호 요청	나의 납세관리인
상속세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세법해석 신청	
개별소비세 신고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외부위원회	
인지세 신고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탈세제보	
주세 신고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증권거래세 신고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				기타	
종합부동산세 신고		주류면허 관련 신청·신고					
교육·교통 에너지환경세 신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 국세청, 2023. 8

- (지급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 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합니다.
- 총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
- (심사결과)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 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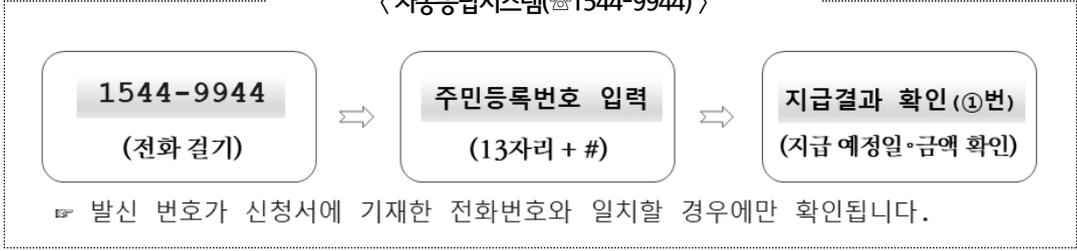
## 1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 □ 심사결과 확인 방법

-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8. 29.~9.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



〈 홈택스(www.hometax.go.kr) 〉

- ▶ 모바일 :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 PC :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 상황

□ 장려금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8월 29일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8월 28일 우편 발송)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 접속 → 마이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 지급 규모 (그래프: 가구 기준)

(만 가구, 억 원)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61	28,274	225	24,807	36	3,467



## 참고 2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유형 ('22. 12. 31.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1), 70세 이상 직계존속2)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신청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 충족)

소득요건 (부부합산)	◇ '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1) 미만 ('22. 6. 1. 기준)				
	토지·건물·승용차(기준시가, 전세금2), 금융자산(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 시가, 비상장·채권: 액면가), 회원권·조합원 입주권(불입액) 1)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감액 2)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실전세금], (상가) 실전세금				

### 신청 제외

- '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